

우리의사명은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

노인학대예방및대응지침

1577-1389



명 칭	내 용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학대, 정신적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
노인학대의구체적 행위	위협, 강하게 혼든다,無理하게 먹인다, 감금 등
노인학대 프로그램	언어, 정서적학대, 재정적 학대와 노인복지법 등

2025

 다복요양원

노인학대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실버스마일

Silver
Smile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접수



현장조사



사례판정



서비스제공



평가 및 종결



사후관리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믿는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
-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1389로 신고합니다.
-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기관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1577-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

1. 노인학대 신고접수(1577-1389) 및 현장조사
2. 노인학대 개입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상담
3.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 체계확립 :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 :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6.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알쏭달쏭 학대행위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 친하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반말을 한다.
- 어르신이 믿는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다.
- 업무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체한다.
- 급하게 시설비가 필요해서 어르신이 맡겨놓은 금품을 사용했다.
나중에 돌려드리면 되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기록도 하지 않았다.
- 입소한 어르신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시설청소를 해야 한다.
-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방에 못 쓰는 물품, 취급주의 물품을 쌓아 놓았다.

위의 예시는 모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노인학대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노인과 인권

Q 인권이란?

A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

Q 노인인권이란?

A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Q 시설종사자의 인권이란?

A ()

Q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이란?

A ()

당신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팔호 안에 들어갈 답이 다른 내용일까요?

시설종사자와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모두 보장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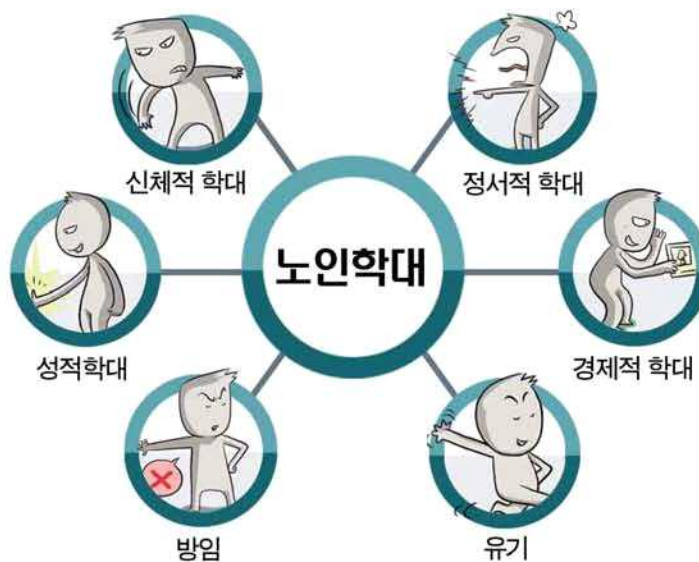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요양보호사 김씨는 최근 치매로 시설에 입소한 오씨 할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오씨 할아버지는 김씨가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꼴 보기 싫으니까 저리가!”,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해”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른다. 어느 날은 지팡이로 김씨를 갑자기 내려치려 하자, 요양보호사 김씨는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를 뺏고 할아버지 두 손을 끈으로 묶어 침대에 강제로 옮긴 뒤, 30분간 방 침대에서 내려오면 지팡이로 맞는다며 침대 귀퉁이를 지팡이로 때리며 엄포를 주었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를 체크☑ 해봅시다.

- ☐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타박, 긁절 등의 피해가 생긴 적이 있다.
-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한 적이 있다.
- ☐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 적이 있다.
- ☐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 적이 있다.
- ☐ 적법한 절차 없이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끈이나 억제대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사용한 적이 있다.
- ☐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사, 음료,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로부터 단절시킨 적이 있다.
- ☐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 적이 있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요양보호사 이씨는 시설에서 일한지 3년째로 이젠 제법 일이 능숙하다. 그러나 시간 내 일을 끝내려다 보니, 난폭하게 기저귀를 갈거나 생활노인들의 자질구레한 요구를 못들은 척하는 행동이 늘기 시작했다. 이를 본 생활노인 중 조씨 할머니가 불평을 털어놓자 화를 내며 “힘들어 죽겠는데 별 시비를 다 걸고 있네! 정말 버릇이 없는 할망구일세.”라며 얼굴을 획 돌리고 방을 나갔다. 이후에 요양보호사 이씨는 더욱 조씨 할머니를 무시하는 모습이 많아졌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를 체크☑ 해봅시다.

- ☐ 어르신을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등 마치 없는 사람 처럼 대한 적이 있다.
- ☐ 어르신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모욕적인 말,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 ☐ 어르신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낸 적이 있다.
- ☐ 어르신에게 ‘집으로 보내겠다’, ‘밥 안주겠다’, ‘죽게 내버려두겠다’ 등의 위협과 협박을 한 적이 있다.
- ☐ 입소 및 퇴소, 물품 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어르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행한 적이 있다.
- ☐ 어린이가 다루 듯하며, 반말을 사용한 적이 있다.
- ☐ 종교활동을 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참여시킨 적이 있다.
- ☐ 어르신의 가족, 친구 등과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적이 있다.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입소한지 얼마 안 된 박씨 할머니 기저귀를 이성 요양보호사가 교체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는 할머니에게 “아직도 여자인 줄 아니봐. 이젠 다 보여줘도 괜찮거든요.”라고 비웃으며 강제로 기저귀를 갈았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학대를 체크☑ 해봅시다.

- ☐ 어르신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킨 적이 있다.
-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은 적이 있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모 양로시설에서는 보호자인 아들이 시설이용비를 3개월째 지불하지 않자, 노인이 끼고 있는 금으로 된 반지를 강제로 빼앗고 할아버지에게 직접 아들에게 전화해서 시설이용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호자 없이 퇴소시키겠다고 전하라고 강요했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를 체크☑ 해봅시다.

- ☐ 어르신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한 적이 있다.
- ☐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노령연금 등)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 적이 있다.
- ☐ 어르신 돈이나 재산을 어르신 마음대로 관리 또는 사용 못하게 한 적이 있다.
- ☐ 어르신의 재산을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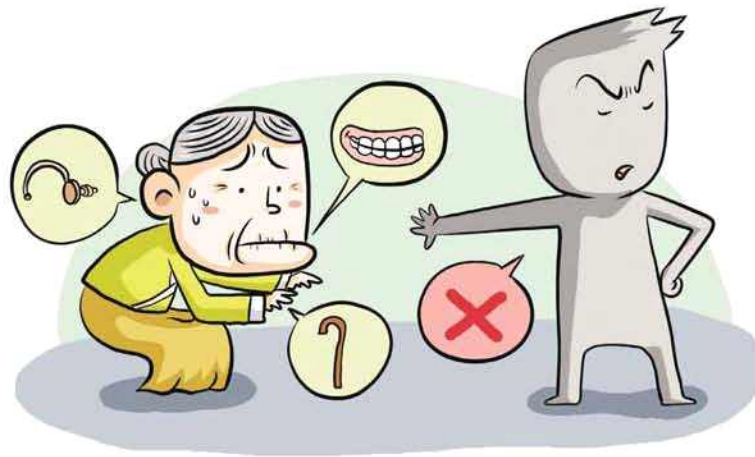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시설에 어머니를 맡긴 정씨는 명절에 잠시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모처럼 목욕을 시키려고 보니 엉덩이에 땀띠가 나서 짓무르기까지 한 것을 발견했다. 병원에 곧바로 가니 의사가 꽤 오랫동안 진행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놔두었냐는 말을 했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임 행위를 체크☑ 해봅시다.

- ☐ 스스로 할 수 없는 식사, 배변, 목욕, 옷입기 등 일상생활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 ☐ 화재, 안전사고, 위생문제 등 위험한 환경 등에 노출시킨 적이 있다.
- ☐ 청결유지를 소홀히 하여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하거나 악취가 난 적이 있다.
- ☐ 어르신의 의복, 침구 등을 비위생적으로 제공한 적이 있다.
- ☐ 어르신의 의복을 날씨와 계절에 맞지 않게 제공한 적이 있다.
- ☐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 치료를 신속히 취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 ☐ 어르신에게 필요한 보장구(휠체어, 보행보조차, 위생용품, 이동식좌변기 등)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 ☐ 돌봄의 부족과 소홀로 악취, 욕창, 염증 등이 나타나거나 심해진 적이 있다.
- ☐ 생활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다.
- ☐ 어르신이 치료, 약복용, 식사 등을 거부하여 몸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목격한 적이 있다(자기방임).
- ☐ 어르신이 자살을 계획 또는 시도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자기방임).



유 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입소비용이 몇 달째 미납되어 연락하면 가족들이 내일 입금하겠다고 한게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가족들이 전화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입소비용 미납으로 노인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라고 보낸 후 노인을 집 앞에 내려드리고 왔습니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기 행위를 체크☑ 해봅시다.

-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만을 떠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 ☐ 시설 입소 후 가족과 연락을 시설 측에서 두절시킨 적이 있다.
- ☐ 어르신을 시설 입소 후 알 수 없는 낯선 곳으로 장시간 옮긴 적이 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려면 (시설운영 유의점)**

노인 관련 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의 가족, 동료노인, 외부인 뿐 아니라 시설의 장과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의 역할	시설종사자의 역할
•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 •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 1인 이상 참여	•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 바람직한 노인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 마련

* 최적의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2010).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서 인용함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요령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신고방법

- **1577-1389**로 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신고내용

- 피해 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신고자의 비밀보장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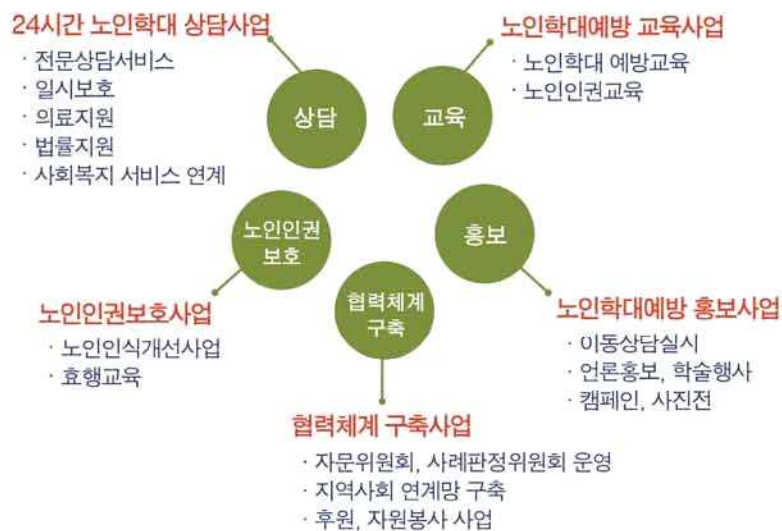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소개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업무 실시
- 사업내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목 적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강화
- 입소대상 : 만60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 입소기간 : 입소일로부터 3개월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협력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보장은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으로 가능합니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25개소)

전국 공통번호 **1577-1389**(24시간 상담)

구 분	주 소	연 락 처	홈 페이지
중 앙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55 성촌빌딩 2층	02)3667-1389	www.noinboho.or.kr
서울 남 부	서울 서초구 방배2동 3274-3	02)3472-1389	www.seoul1389.or.kr
서울 북 부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70-2번지	02)921-1389	www.sn1389.or.kr
부 산 동 부	부산 동구 초량3동 1164-5번지 2층	051)468-8850	www.bs1389.or.kr
부 산 서 부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60-5	051)867-9119	1389.bulgukto.or.kr
대 구	대구 남구 이천동 418-1 2층	053)472-1389	www.dg1389.or.kr
인 천	인천 남동구 간석3동 26-3 인천시사회복지회관 204호	032)426-8792~3	www.ic1389.or.kr
광 주	광주 남구 사동 57-1	062)655-4155~7	www.gjw.or.kr/kj1389
대 전	대전 유성구 도룡동 385-14 더포엠 II 102호	042)472-1389~90	www.dj1389.org
울 산	울산 남구 아음동 577-6	052)265-1389	www.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한국
경 기 남 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10번지 성남실내체육관 3층	031)736-1389	www.kg1389.or.kr
경 기 북 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26-10	031)821-1461~2	www.gnnoin.kr
경 기 서 부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92-8번지 2층	032)683-1389	www.ggw1389.or.kr
강 원	강원 춘천시 후평동 710-4	033)253-1389	www.1389.or.kr
강 원 동 부	강원 강릉시 포남동 1162번지	033)655-1389~90	www.gd1389.or.kr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충북재활의원 3층	043)259-8120~2	www.cb1389.or.kr
충 북 북 부	충북 충주시 지현동 1498번지	043)846-1380~2	www.cbb1389.or.kr
충 남	충남 아산시 변영로 206번길 42	041)534-1389	www.cn1389.or.kr
전 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66-8	063)273-1389	www.jb1389.or.kr
전 남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53-1389	www.jn1389.or.kr
전 남 서 부	전남 목포시 상동 970-8	061)281-2391	www.j1389.or.kr
경 북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 69-4 기쁨의교회복지관 208호	054)248-1389	www.noin1389.or.kr
경북서북부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85 3층(본사무소) 경북 김천시 평화동 12길 10 2층(분사무소)	054)655-1389~90 054)436-1390	www.gbnw1389.or.kr
경 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4-3 금강노인복지관 2층	055)222-1389	www.gn1389.or.kr
제 주	제주 제주시 삼도2동 44-1	064)757-3400	www.jejunoin.org

노인학대,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 골절상으로 진료를 받으려온 할머니의 몸에는 상처가 가득하다. 할머니는 웅크린 채 아무 말이 없고 며느리는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누군가 때리거나 꼬집은 상처로 보인다.



▣ 한겨울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약취가 나는 차가운 방안에 여름이불을 덮고 있다. 수급비는 알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상한 음식만 보이고 돌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 당신은,
바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신고 안하면 **양심의 가책? + 과태료 3백만원~**

고민하는 당신을 돕기 위한 해결책이 이 안에 있습니다.

왜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인권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 즉 “인권감수성”

- 인권이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입니다.
 - 사회적 약자는 권리 침해와 박탈의 경우가 많으므로 ‘약자를 위한 인권이 지켜지고 권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특히 학대피해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취약한 인권 사각지대에 있기에 이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 인권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존중’을 요구
 - 나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 사회구조적으로 상대적 약자(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나의 인권도 보장될 것입니다.
 -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을 도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은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노인 인권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노인학대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당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1577-1389** 로 신고해주세요.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보시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노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태적 분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대표적 행위

- 꼬집고 때리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밀어서 넘어뜨린다.
- 제한된 공간에 감금하거나 거주지출입을 통제한다.
- 침대 등에 묶거나 신체를 구속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 및 물품(밥통, 냉장고), 식사, 음료 등으로부터 단절시킨다.
-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인다.
- 원치 않는 일(노동)을 강요한다.



예측 징후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 이상한 체중감소
- 바깥출입이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서 배회함
-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대표적 행위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한다.
- 친구,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며 사회활동, 종교 활동, 이성교제 등을 방해한다.
- ‘죽이겠다’, ‘시설로 보낸다’,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모욕적인 말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예측 징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못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 다툼, 욕설, 큰소리가 자주 들림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대표적 행위

-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강요 또는 시도한다.
-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일부를 만진다.
- 신체를 빚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또는 목욕을 시킨다.

예측 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
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대표적 행위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신용을 도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 대리권을 악용한다.
-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예측 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노인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노인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대표적 행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컨테이너 거주 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 자기방임

- 노인이 의료적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이 돌봄을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다.
- 알코올 남용 및 자살시도

예측 징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
- 노인 주변 환경 건강이나 안전의 위험 증후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환경
-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 기본적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 자기방임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 생명에 위협이 될 의식주 거부를 노인 스스로 함
- 자살을 시도함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대표적 행위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예측 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쉬어가는 시간 Q&A

다음 행위는 노인학대 유형 중 무엇일까요?

1. 노인의 허락 없이 신용을 도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
2.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한다. ()
3.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
4.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
5.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한다. ()
6. 노인이 의료적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
7.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정답

1. 경제적 학대 2. 신체적 학대 3. 방임 4. 정서적 학대 5. 성적 학대 6. 자기방임 7. 유기



노인학대, 처벌규정이 있나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노인학대 신고방법은?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 1577-1389로 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신고할 때는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및 주요정보에 대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신고자 비밀보장은 되나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노인복지법 제57조』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또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보호절차는?



신고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 (24시간 상담)



접수

학대 관련 피해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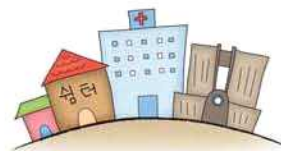
현장방문조사

학대피해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



학대사례판정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상담, 법률, 의료,
쉼터입소 등



평가 및 종결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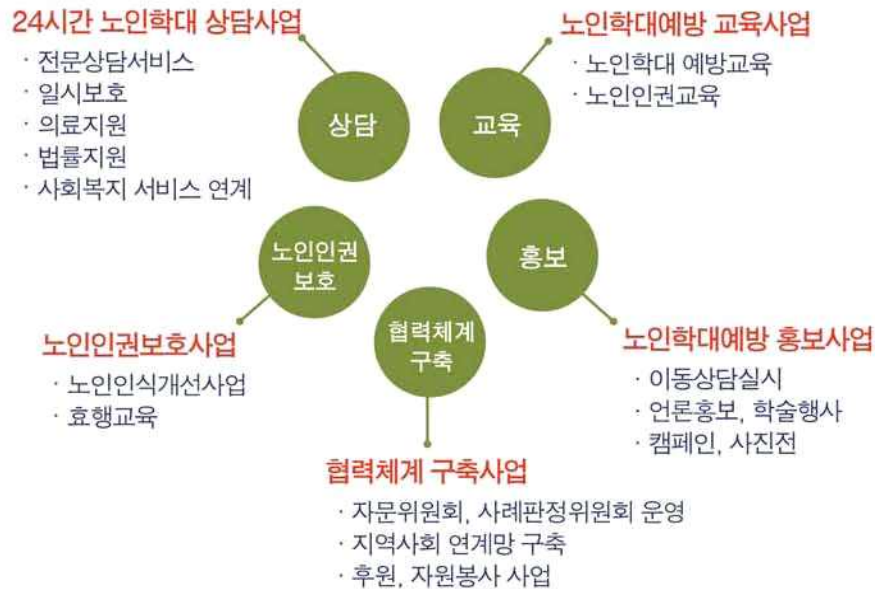


사후관리

종결 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학대 재발 방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업무 실시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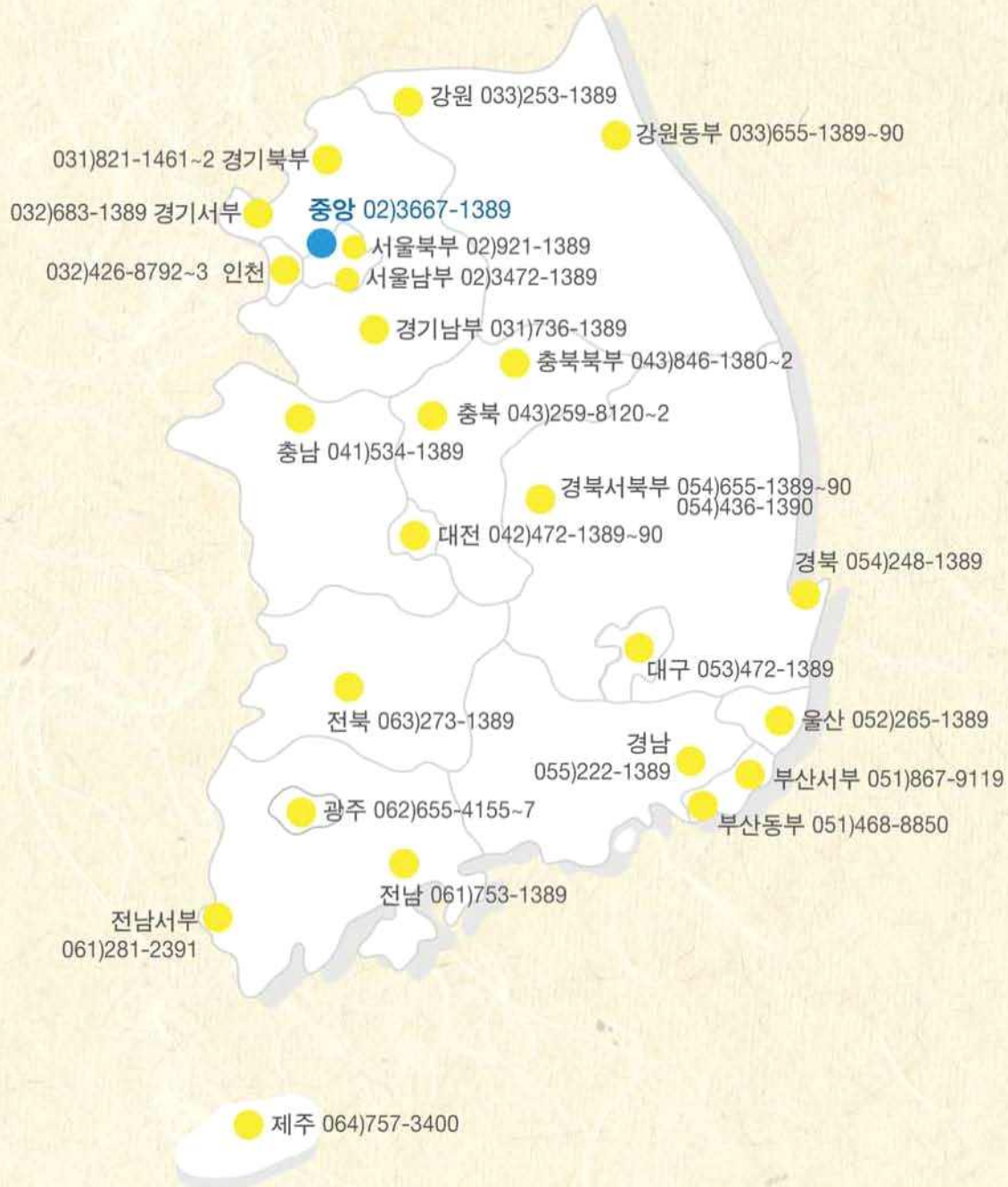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응급상황의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노인복지법 제39조의7)
- 사업내용
 - 학대피해노인 긴급 보호 및 의식주 제공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 재발 방지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해 학대행위자 등 가족상담서비스 제공
 -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진행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25개소)

전국 공통번호 **1577-1389** (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킴이가 되어 주세요.

노인복지법 근거조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부터 12(비밀누설의 금지)